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영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82

발의연월일: 2021. 4. 19.

발 의 자:신영대·김정호·박완주

서삼석 · 송재호 · 신정훈

위성곤 • 이동주 • 이병훈

이장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불구하고 창업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이 150만 개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. 그중에서도 여성창업 기업이 전년대비 14.7% 증가한 수치인 46.7%를 차지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임. 최근 아마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마존 판매 업체 중 여성 소유 기업이 약 4 2%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여성 창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.

이에 정부도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데, 이때 예비청년창업자나 청년창업자를 우대하고 있음. 그러나 창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여성은 약 20%에 불과해수혜 대상의 성비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고,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소외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, 여성과 장애인 창업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우대 대상을 "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"를 "예비 청년·여성·장애인 창업자 및 청년·여성·장애인 창업자"로 변경하여 여성· 장애인 창업 지원과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·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함(안 제4조의2제2항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제2항 중 "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"를 "예비 청년·여성·장애인 창업자 및 청년·여성·장애인 창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창업촉진사업의 추진	제4조의2(창업촉진사업의 추진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	②
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	
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	예비 청년·여성·장애인 창업자
<u>자</u> 를 우대할 수 있다.	및 청년·여성·장애인 창업자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